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천준호·이해식·김 윤

정태호 · 박상혁 · 신영대

주철현 · 정준호 · 문금주

조 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 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가스 ·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라"를 ""채권금융회사등"이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로부터"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금융회사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로,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각각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 1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3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3의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 3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3의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③
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u>"채권금융회사"라</u> 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u>라</u>
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u></u>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u>채권금융회</u>	채권금융회
<u>사</u>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u>사등</u>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②
<u>채권금융회사는</u>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u>채권금융회사로부</u>	③ <u>채권금융회사등으</u>
<u>터</u>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로부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	4

- 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u>채권</u>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u>채권금융회사는</u> 그 채무조정안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 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u>채권</u>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 정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 저정은 <u>채권금융회사가</u>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 조 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

<u>채권</u>
금융회사등에
<u>채권금융회사등은</u>
⑤
<u>체권</u>
<u> 금융회사등이</u>
6
<u>채권금융회사등</u>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u>채권금융회사등이</u>
 1 <i>C</i> (청체기 가야)
1. ~ 6. (현행과 같음)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정안을 개인채무자와 <u>채권금융</u> <u>회사가</u>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 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 로 본다.

- ② <u>채권금융회사가</u>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 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 일하게 미친다.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생략)

<신 설>

2.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채권금융
	회사등이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	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u> 장학재단</u>
	2. ~ 3. (현행과 같음)
	3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의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u>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u>
	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
	자(「전기통신사업법」 제38 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조제1항에 따다 기간당신사업 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 /1조ェリー ~1662/11円二字

<신 설>

<신 설>

4. (생략)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u>채권금융회사는</u> 개인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 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를 포함한다)
3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
신과금서비스제공자
3의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
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제1호의2·제2호·제3</u>
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
<u> 5까지</u>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